

국제상사분쟁에서 KCAB 조정의 활용방안 - AA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장은희*

-
- I. 서론
 - II. 조정의 개념 및 특징
 - III. KCAB와 AAA의 조정비교
 - IV. KCAB 조정의 활용방안
 - V. 결론
-

주제어 : 조정, 국제상사분쟁, KCAB, AAA, ADR

I. 서론

최근 국제무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과 운송수단의 급속한 발달은 세계 교역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국제비즈니스를 보다 다양한 사업분야로 확대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간 무역분쟁의 성격을 이전보다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제상사분쟁은 중재에 의한 해결이 널리 이용되어 왔지만 그 한계점 또한 다수 지적되고 있다. 이에 비용, 시간 및 절차적 복잡성 등을 이유로 중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

*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강사, E-Mail : berjaya@hanmail.net

이라 한다)이 요구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조정을 통한 해결이 부상하고 있다.

조정(Mediation)은 사인 간에 발생한 분쟁을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개입하여 분쟁당사자가 화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때 조정인은 양당사자들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조력함으로써 조정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조정은 중재에 비하여 신속하게 진행되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융통성이 있다.

조정이 활성화된 미국중재협회(America Arbitration Association, 이하 'AAA'라 한다)는 상사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세계 최대의 ADR 서비스 기관이지만 근래에는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절차는 변호사나 법률가가 아닌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화해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AAA의 조정인은 중립적·주도적 역할로서 당사자들에게 법적 결론을 제시하기 보다는 사건 이면에 숨어있는 당사자의 실질적 이해관계를 찾아내어 당사자들이 결론을 도출하도록 돕는다. 반면 대한상사중재원(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이하 'KCAB'라 한다)는 그동안 중재에 의한 무역분쟁의 해결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2017년 조정규칙을 제정·시행하는 등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조정을 통한 국제상사분쟁 해결기관으로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역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고, 중재보다 간이·저렴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국제상사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서 진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세계적으로 조정이 활성화된 미국 AAA의 조정규칙 및 운영상황 등을 우리나라 KCAB 조정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KCAB 조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조정의 개념 및 특징

1. 조정의 의의

조정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조정인이 분쟁당사자를 도와 당사자들 스스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돕는 분쟁해결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 조정에

1) K. K. Kovach, *Mediation : Principles And Practice*, 3rd Edition West, a Thomson Business, 2004, p. 26.

서 양당사자를 도와 분쟁을 해결하고자 조력하는 조정인은 당사자에게 해결책을 강요하기 보다는 그들의 이해관계나 욕구를 파악하여 당사자들 스스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한다.²⁾

한편 분쟁에 휘말린 당사자들은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지향하는 방식과 목표에 최대한 부합하는 ADR의 방법을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것이다. 예컨대,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고 사업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거나 신속·저렴하게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당사자들이라면 ADR 중에서 조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조정은 최종결과로 인해 최소한 일방 당사자가 법적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소송보다 가벼운 분위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³⁾ 사건종결 후 승패가 갈린 양당사자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중재보다는 우호적이다.

2. 조정의 장점

1) 시간과 비용절감

조정은 중재 및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신속·저렴하게 분쟁이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조정이 유연하고 비공식적인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이며, 조속하게 분쟁이 해결됨으로써 지속적으로 감정이 소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밖에 분쟁해결에 광범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및 전문 감정인 비용이 조정에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주간 또는 야간에도 절차가 진행되므로 시간절약이 가능하다.⁴⁾

2) 자기 결정권 및 정서존중

조정에서 양당사자는 스스로 결정한 바를 보장받으며, 자신들의 감정 또한 존중받는다. 소송이나 중재에서는 제3자가 내린 결론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복종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조정에서는 당사자들 스스로 사건에 대한 종국적 책임을 지며, 결론까지 도출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조정의 당사자들은 그들의 감정표출이 가능하고,⁵⁾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진

2) 박노형, “조정 선진화 및 활성화 소고”, 계간중재 제329호, KCAB, 2009, p. 17.

3) Program on Negotiation, “Trying to resolve a dispute? Choose the right process”, *Negotiation*, Vol. 12 No. 8, August 2009, p. 5.

4) K. K. Kovach, *Mediation in a Nutshell*, 2nd Edition West, a Thomson Business, 2010, pp. 39~40.

5) 근로사건, 가사사건, 폭행 및 상해사건 등에서는 당사자들이 감정을 표출하여 사과하고 용서하는 과정들이 자주 발생한다.

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과정을 중요시 한다. 분쟁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감정이 상하게 마련이고, 따라서 감정이 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송이나 중재에서는 증거능력 또는 증거력에 더 초점이 맞춰지므로 당사자들의 정서를 헤아리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⁶⁾

3) 비밀유지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은 양당사자의 비밀이 유지되므로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다.⁷⁾ 소송은 공개재판으로 절차가 진행되기에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정은 모든 사안의 비밀유지가 기본원칙이며, 조정인 또한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법인이나 대기업이 분쟁해결의 방법이나 당사자의 화해금액 등을 대중에게 공표하는 것을 꺼린다면 조정에 의한 해결이 적절하다.⁸⁾

4) 분쟁당사자 사이의 유대관계 유지

분쟁당사자 사이의 유대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조정의 또 다른 장점이다. 양당사자는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오랜 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분쟁 그 자체만으로는 다소 감정이 상할지라도 상대방과의 관계단절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을 수 있다.⁹⁾

아울러 사업적인 측면에서 조정은 양당사자에게 관계지속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즉, 일정사건에서 조정인은 반드시 조정을 성립시키겠다는 생각을 고수하기 보다는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거나 의견수렴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갖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비록 분쟁사안은 해결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진정한 조정의 취지는 발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조정제도의 유형

1) 법원조정

법원조정은 민사사건의 분쟁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¹⁰⁾ 수소법원이

6) Kovach, *op. cit*(2010), pp. 41~42.

7) S. B. Kent and C. W. Wilson, "Questions Clients Have about Whether (and How) to Mediate and How Counsel Should Answer them",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 63.2, May-July 2008, p. 29.

8) Kovach, *op. cit*(2010), p. 40.

9) *Ibid*, p. 42.

10)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분쟁의 당사자들은 법원에 서면 또는 구술로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항소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때 성립한다.¹¹⁾ 수소법원은 사건의 내용 및 절차를 고려하여 소장의 접수단계, 속행단계 혹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¹²⁾ 이때 회부된 사건은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진행한다.¹³⁾

조정이 성립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고,¹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소송절차로 복귀하며,¹⁵⁾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지된다.¹⁶⁾ 조정위원회는 조정장이 양당사자와 합의하여 선정하거나 조정장이 2인 이상의 조정위원을 지정함으로써 구성된다.¹⁷⁾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양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도출되었다면 합의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할 때 비로소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며,¹⁸⁾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한다.¹⁹⁾

2) 법원연계조정

KCAB의 분쟁종합 지원센터는 2010년 5월부터 조기조정사건을 배정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법원연계조정이다. 이러한 조정형태는 법원이 외부조정기관에 조정사건을 배부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조정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시에는 법원이 이 사건을 돌려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을 취한다.

현행 민사조정법에 의하면 법원장이 외부조정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의 조정 실무 책임자를 총괄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이 총괄조정위원이 소속 조정위원들에게 한 건씩 사건을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조정기관에서의 조정을 비상임조정위원의 조정단계로 인정하고, 합의가 성사되면 최종적인 합의내용을 조정담당판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국시키는 것이다.²⁰⁾

(민사조정법 제2조 및 제5조 제1항).

11) 민사조정법 제6조.

12) 이로리, “우리나라의 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계간중재 제337호, KCAB, 2012, p. 18.

13) 민사조정법 제7조 제3항 및 제5항.

14) 민사조정법 제4조 제3항.

15)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5항.

16)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1항.

17) 민사조정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제2항.

18) 민사조정법 제28조.

19) 민사조정법 제29조 및 제34조 제4항.

20) 정준영, “민사조정제도의 현황과 전망”, 분쟁해결 창간호, 한국조정학회, 2011, p. 229.

3) 법원부속조정

우리나라는 2009년 2월 6일, 민사조정법을 개정하여 상임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법원행정처장이 상임조정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직무를 수행할 법원을 지정하였다.²¹⁾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민사소송사건이 증가하면서 재판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이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시도되었고, 법원 내에 조정을 전담하는 법원조정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개시되었다.²²⁾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5월 1일부터 소장과 답변서만이 교환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조정 가능한 사건을 선별하여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조정에 회부하는 ‘조기조정제도’를 실시하였다. 민사소송은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후 재판이 개시되려면 6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기간에 재판장이 조기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에 조정사건이 배당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조기조정이 실시되며, 당사자 쌍방이 원하는 때에는 연장이 가능하다.²³⁾

4) 사적조정

민간에서 주관하는 조정이 사적조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²⁴⁾에 의한 조정을 제외하고는 사적조정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적조정이나 중재를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이나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²⁵⁾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적조정의 이점은 i) 절차적 측면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여 노동분쟁조정의 입지를 격상시킬 수 있다는 점, ii) 집단적 노사분쟁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아 노사분쟁을 폭넓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 iii)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 조정인이 참여하여 조정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²⁶⁾

5) 행정조정

행정조정은 우리나라 특별법에 따른 조정기관이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산하기관이나 그 부속기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형태를 취하거

21) 법원행정처, 법원조정센터 자료집 I, 2011, p. 326.

22) 상계서, p. 19.

23) 이로리, 전개논문, p. 20.

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9930호.

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26) 도재형, “사적조정의 기법”, 노동법연구 제10권 제1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1, p. 25.

나 독립된 법인 및 기관이 행정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형태의 조정을 의미한다.²⁷⁾

우리나라의 행정조정은 조정 본연의 의미와는 다소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즉, 조정의 조사관이 쟁점을 정리한 서면을 근거로 조정안을 준비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안을 제시·수용할 것을 권고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방식은 양쪽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절충하여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하는 기존의 조정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바, 조정안에 당사자가 동의하면 재판상의 화해²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민법상의 화해²⁹⁾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³⁰⁾ 어떠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는 각 개별법령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³¹⁾

III. KCAB와 AAA의 조정비교

1. 운영비교

1) AAA의 조정

AAA는 상사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1926년 창설된 세계 최대 규모의 ADR 서비스기관이다.³²⁾ 2009년 6월에는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사조정절차(Commercial Arbitration Rules & Mediation Procedures Including Procedures for Large, Complex Commercial Disputes)를 제정하여 실시 중이며, 2013년 4월에는 조정분과를 새로이 신설하는 등 조정분야에서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³³⁾

27) 행정조정은 사인간의 분쟁을 행정기관의 분쟁해결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뜻하는 것일 뿐 그 분쟁의 내용이 행정과 관련된 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8) 조정안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곳으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지적권위원회,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이다(양경승, “우리나라 ADR의 활성화 방안과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2010, p. 78).

29) 조정안에 대하여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곳으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상의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중재위원회 등이다(상계서, p. 78).

30) 김민중·유병현, 행정형 ADR의 효력에 관한 국내외제도 분석, 법원행정처, 2010, p. 8.

31) 이로리, 전계논문, p. 21.

32) Private Justice, *How civil litigation is becoming a private institution: The rise of private dispute centers*, Sou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621, 1994, pp. 626~627.

(1) 온라인조정

AAA는 1만 달러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온라인조정³⁴⁾으로서 해결하고 있다. 온라인조정은 양당사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후 AAA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48시간 이내에 조정인이 선정되고, 분쟁의 쟁점사항은 30일 이내에 해결된다.

조정인의 보수를 포함하여 200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초과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온라인조정이 실시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절차 중에 조정이 종료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200 달러는 반환되지 않는다. 조정의 전 과정이 온라인상의 가상채팅룸에서 조정인과 양당사자가 만나 개별미팅(Caucus)³⁵⁾ 혹은 합석미팅(Joint Session)³⁶⁾에 의해 진행되며, 실제적인 전화면담이나 대면미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³⁷⁾

(2) 행위준칙모델

AAA는 1994년 조정인의 행위준칙모델(Model Standards of Conduct for Mediators)³⁸⁾을 제정하였고, 2005년 9월에 개정하여 조정인의 행위에 대한 표준강령으로서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 규범은 조정인이 지녀야 할 행동방침을 9개 조항으로 구분하여 윤리적인 방침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되었다.³⁹⁾

본 모델의 규정은 조정인으로 하여금 양당사자가 조정의 절차 및 결과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⁴⁰⁾ 편파적인 매너로 조정에 임하지 말아야 하며,⁴¹⁾ 양당사자와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놓이지 말 것⁴²⁾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부응시킬 경우에만 선정된다는 것을⁴³⁾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조정 중에 양당사자로부터

33) 오원석·김용일,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긴급구제(emergency relief system)’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1, p. 240.

34) <http://www.aaamediation.com> 참조.

35) 조정인은 분쟁당사자와 만나 회의를 주재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데, 개별미팅은 조정인과 일방당사자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비공개 회의를 말한다(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규칙 시행에 즈음하여”, 계간중재 제337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p. 42 참조).

36) 합석미팅은 조정회의 중에 양당사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뜻한다.

37) <http://www.mediation.org>(2018. 1. 9 최종방문).

38) AAA는 2002년부터 중재인과 조정인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C. Jennifer,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s Commitment to Diversity”,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 7 Issue 1, Feb-Apr 2008, p. 30).

39) Model Standards of Conduct for Mediators, Preamble.

40) Model Standards of Conduct for Mediators, Standard I-A.

41) Model Standards of Conduct for Mediators, Standard II-B.

42) Model Standards of Conduct for Mediators, Standard III-A.

43) Model Standards of Conduct for Mediators, Standard IV-A.

터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조정인은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⁴⁴⁾ 조정을 진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할 것,⁴⁵⁾ 그리고 타 조정인과 공조하여 분쟁당사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정인이 노력해야 할 것도⁴⁶⁾ 규정하고 있다.

(3) 정기 간행물 발간

AAA는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University(이하 'AAAU'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AAAU는 미국을 포함한 국외에서 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정에 관련된 서적을 발간·보급하고 있다. *Dispute Resolution Journal*은 AAA가 조정의 보급과 활성을 꾀하기 위하여 주력으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로서 분쟁당사자, 교육자 또는 조정 관련자들이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동 저널에 수록된 기사들은 조정실무자나 학자들에게 ADR의 쟁점 및 조정기법을 소개하고, 조정의 이용자에게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2) KCAB의 조정

1970년도에 설립된 KCAB는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가능한 상거래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었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국제상사조정규칙은 KCAB가 조정에 관한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기존에 시행하던 법원주도형 조정 및 행정형 조정에서 탈피하여 처음으로 민간형 조정체도로 시행하고 있다.

(1) 상사조정

KCAB는 2000년 12월부터 일반무역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선적 전 검사분쟁조정을 주로 실시하였는데, 그에 관련된 사건으로는 수출자와 선적 전 검사기관 사이에 발생한 분쟁⁴⁷⁾ 예컨대, 가격산정, 품질, 수량 및 통관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2000년 12월부터 추가된 무역관련 분쟁조정은 무역거래자 상호간 또는 무역거래자와 외국업체간 수출입과 관련된 선적 불이행, 선적지연, 물품대금의 미지급, 계약관련, 품질불량, 물품의 상이

44) Model Standards of Conduct for Mediators, Standard V-A.

45) Model Standards of Conduct for Mediators, Standard VIII-A.

46) Model Standards of Conduct for Mediators, Standard IX-B.

47) 대외무역법 제45조 제2항.

등에 관한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정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이 작성되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작성된 조정안을 양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며,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⁴⁸⁾

(2) 민간조정

KCAB는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원연계조정을 시행하면서 KCAB가 외부의 법원연계조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역할이 시작되었다.⁴⁹⁾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조정기관과 비교할 때 KCAB는 사법부가 인정한 유일한 민간조정기관이라는 특색과 함께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건을 취급하는 ADR 기관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KCAB는 재판부로부터 위탁받은 사건에 대하여 1인의 조정위원을 선정할 수 있되, 선정된 조정위원은 자신의 재량으로 분쟁당사자와 대면미팅을 주재하거나 전화회의 등을 시도하면서 화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⁵⁰⁾

(3) 중재규칙상 조정

우리나라에서 조정은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절차를 진행하다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에 중재인이 조정인의 역할까지 겸하게 되고, 화해판정의 형식으로 결과가 도출되는 ‘중재규칙상의 조정’이 그 시초가 되었다.⁵¹⁾

중재규칙상 조정에서 KCAB는 중재신청의 접수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양당사자가 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요청을 하면 사무국이 중재절차 개시 전에 조정에 회부하여 진행한다.⁵²⁾ 그와 동시에 사무국은 중재인명부에서 1인 또는 3인을 선정하여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의 재량으로 조정절차 및 방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인이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시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곧바로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한다.⁵³⁾

48)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49) 김지호, 전제논문, p. 36.

50) 상계논문, pp. 36~37.

51) 최옥환, “민간형 조정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0, p. 71.

52) KCAB 국내중재규칙 제18조 제1항.

53) KCAB 국내중재규칙 제18조 제2항~제4항.

2. 제도비교

1) 조정규칙

(1) 절차의 개시

AAA는 조정의 적용대상을 계약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분쟁에 대하여 AAA의 조정규칙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⁵⁴⁾ 이는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조정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절차가 개시됨을 명시한 것으로 당사자간의 조정합의는 사전계약서에 조정조문을 삽입함으로써 가능할 수도 있고, 분쟁발생 후에 사후조정을 통하여 합의할 수도 있다.⁵⁵⁾

KCAB는 당사자간의 계약, 기타 법률관계로부터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분쟁을 KCAB 조정규칙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적용된다. 조정의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KCAB의 조정사무국에 제출하거나 조정합의가 없을 시에는 사무국이 피신청인에게 조정절차에 참여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조정요청을 받은 피신청인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참여에 동의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⁵⁶⁾

조정절차 개시를 위해 AAA 및 KCAB의 조정규칙은 동일하게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조정합의를 요구하고 있다.⁵⁷⁾ 또한 이러한 조정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을 통하여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시도하도록 요구한 점도 양 조정규칙이 유사하다. 이에 따라 양 규칙에서 규정하는 조정절차의 개시시점은 동일하다. 즉, 양당사자의 조정합의가 있을 시에는 바로 절차가 개시되지만 조정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조정부탁에 동의한 시점에 개시되는 것이다.

(2) 조정인 선임

AAA에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들은 AAA의 웹사이트를 통해 조정인 프로파일을 검색하여 양당사자가 모두 조정인 선정에 합의하면 진행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시에는 일련의 방식을 따르게 된다. 즉, AAA가 각 당사자에게 조정인명부를 발송하여 합의권고를 받게 되지만 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남은 조정인명부에서 양당사자가 공통으로 지정한 선호도 순서대로 AAA가 조정인을

54) AAA Commercial Mediation Procedures M-1.

55) AAA Commercial Mediation Procedures M-2.

56) KCAB 조정규칙 제3조 제4항.

57) 김지호, 전게논문, p. 39.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AAA의 권
한으로 다른 자를 조정인으로 선정한다.⁵⁸⁾

KCAB에서 조정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1인을 선정한다.⁵⁹⁾ 양당
사자가 조정인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조정인명부에서 선택
하는데, 선정된 조정인은 조정내용에 관하여 법률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선정된 조정인이 사망, 사임 및 기타사유로 결원되었다면 당사자가 조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다시 조정인을 선정하고, 사무국이 선정한 경우에는 사
무국이 다시 조정인을 선정할 수 있다.⁶⁰⁾

AAA와 KCAB 두 규칙 모두 조정인 선정에 있어 양당사자에게 먼저 우선권을
부여하고, 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선정에 협조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선정
된 조정인이 양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자이어야 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다.⁶¹⁾ 하지만 조정인 선정 시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AAA는 온라인상의 후보명단에서 당사자들이 부여한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인을
초청할 수 있지만⁶²⁾ KCAB에서는 사무국이 조정인명부에서 임의로 조정인을 선택
할 수 있다는⁶³⁾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3) 절차진행

AAA에서 각 당사자는 조정절차 및 결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자발적
인 방법으로 조정에 임할 수 있다.⁶⁴⁾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조정인은 당사자들 및
그들의 대리인과 조정회기 전이나 조정회기 중, 그리고 조정회기 후에 개별적인
미팅이나 전화, 서면, 이메일, 온라인, 대면미팅 등의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
다.⁶⁵⁾ 기밀로 유지되어야 할 당사자에 대한 정보는 가능하다면 개별적인 미팅으로
전해야 하며, 조정인은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고, 조정
인과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다면 참관인을 동반할 수 있다.

KCAB의 조정규칙은 양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사안을
충분히 진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방식 이외
에 조정인의 재량으로 형평성, 공정성과 선의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조정

58) AAA Commercial Mediation Procedures M-4(iii).

59) KCAB 조정규칙 제4조 제2항.

60) KCAB 조정규칙 제4조 제3항.

61) 김대환,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KCAB와 AAA의 조정제도의 운
용 및 활용실태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3, p. 114.

62) AAA Commercial Mediation Procedures M-4(ii).

63) KCAB 조정규칙 제4조 제2항.

64) AAA Commercial Mediation Procedures M-7.

65) AAA Commercial Mediation Procedures M-7(ii). KCAB 조정규칙 제4조 제2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조정인이 선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조정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무국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⁶⁶⁾

조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양 기관의 규칙은 조정인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온라인, 이메일, 서면, 전화에 의한 진행방법은 이러한 재량권의 확대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두 규칙에서 AAA 및 KCAB 사무국은 조정인이 사기 또는 중대한 범죄에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공통으로 정하고 있다.⁶⁷⁾ 이러한 특성은 조정이 소송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절차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도 내포한다.⁶⁸⁾

(4) 소송 및 중재와의 관계

AAA의 조정인은 상이한 다른 사법적 절차에서 증언을 강요받지 않아야 하며,⁶⁹⁾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다면 소송, 중재 혹은 다른 절차에서 분쟁의 해결책으로서 당사자나 참관인이 표명한 견해나 제안,⁷⁰⁾ 조정절차에 당사자 또는 다른 참관인이 허가된 부분,⁷¹⁾ 조정인의 제안 및 견해,⁷²⁾ 조정인이 제시한 해결책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표명한 사실⁷³⁾ 등을 증거로서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KCAB는 조정절차와 관련 없이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취득한 자료 외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나 진술을 소송, 중재 및 다른 절차에서 원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정인은 조정 과정에서 수취한 모든 기록과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소송, 중재 혹은 다른 절차에서 조정과 관련된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하며,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조정이 합의에 이르면 당사자들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되, 합의서에 이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KCAB의 중재에 회부한다는 중재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⁷⁴⁾

AAA의 상사조정규칙 제10조와 KCAB 조정규칙 제12조는 유사한 규정을 통해 당사자의 비밀보장을 강조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66) KCAB 조정규칙 제9조.

67) AAA Commercial Mediation Procedures M-13 및 KCAB 조정규칙 제15조.

68) 정선주,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정절차의 개선방안 - 전자거래분쟁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서강법연구 제7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p. 135.

69) AAA Commercial Mediation Procedures M-10.

70) AAA Commercial Mediation Procedures M-10(i).

71) AAA Commercial Mediation Procedures M-10(ii).

72) AAA Commercial Mediation Procedures M-10(iii).

73) AAA Commercial Mediation Procedures M-10(iv).

74) KCAB 조정규칙 제13조.

는 결국 조정인이 조정결과 이후에 자주 소송의 증인으로 소환되게 되면 조정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⁷⁵⁾ 이는 조정제도 활성화에 장애가 됨을 지적한 것이다.

(5) 절차종료

AAA의 조정은 당사자 합의로 분쟁이 해결된 경우, 양당사자가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하지 않기로 조정인이 서면이나 구두로 선언한 경우, 당사자들이 조정절차의 종료를 구두나 서면으로 선언한 경우, 그리고 조정인, 당사자, 당사자의 대리인이 조정심리 이후 21일 이내에 아무런 교신이 없으면 종료된다.⁷⁶⁾

KCAB의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 중에 분쟁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서명 혹은 기명날인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된다.⁷⁷⁾ 하지만 당사자가 분쟁해결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를테면, i) 조정인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종료를 선언한 경우,⁷⁸⁾ ii) 일방당사자 또는 당사자 합의로 조정인에게 서면으로 절차종료를 요청한 경우,⁷⁹⁾ iii) 조정의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⁸⁰⁾ iv) 절차의 개시단계에서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 피신청인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게 판명된 경우,⁸¹⁾ v) 조정비용을 당사자가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정절차는 종료된다고⁸²⁾ 규정하고 있다.

조정절차를 종료함에 있어 AAA의 경우 조정심리가 있는 후 조정 관련자들이 21일 이내에 교신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KCAB는 일방당사자 또는 조정인의 서면이나 구두상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절차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AAA의 규정은 모든 당사자들이 절차종료에 동의하여야만 중지되지만 KCAB는 일방당사자의 중지요청에 의해서도 절차가 종료된다는 점이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서 AAA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방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바로 조정이

75) 조정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일본상사중재협회(JCAA)의 국제상사조정규칙 제8조에 따르면 “분쟁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조정인은 조정대상 분쟁과 연관된 중재절차에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AAA, ICSID, LCIA UNCITRAL, ICC 등의 조정규칙에서는 조정인이 조정대상 분쟁과 연관된 중재나 소송절차에서는 활동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76) AAA Commercial Mediation Procedures M-12(iv).

77) KCAB 조정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78) KCAB 조정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79) KCAB 조정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

80) KCAB 조정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

81) KCAB 조정규칙 제14조 제1항 제5호.

82) KCAB 조정규칙 제14조 제1항 제6호.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양당사자에게 한 번 더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효력비교

AAA의 조정규칙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경우 그 조정안은 ‘당사자 합의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양당사자가 화해한 최종합의문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문이나 중재의 판정문에서 부여하는 기판력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조정의 성립과정에서 의사의 흠결이 있었다면 법원에서 언제든지 다툴 수 있고,⁸³⁾ 당사자의 임의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정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합의서를 중재인이 중재판정문으로 바꿀 수 있다.

KCAB에서도 조정을 ‘당사자 합의’의 효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달리 규정한 내용이 없으면 양당사자 사이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성립된 조정안이 자발적으로 임의이행 되지 않으면 다시 중재나 법원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태생적 한계점을 안고 있다.⁸⁴⁾

AAA와 KCAB 두 조정기관에서 부여하는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 합의와 동일한 효력’으로 요약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의 효력을 주장함에 있어 민법상 화해로 보는 경우와 재판상 화해로 보는 경우가 대립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당사자가 조정이 성립된 후에 이 화해계약을 불이행하였다면 조정서상의 화해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조정의 내용에 대하여 법원의 심사청구가 가능한 것이 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엔 조정에 집행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효력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러한 집행력은 법원의 재판에 인정되는 강제적 효력으로서 법원의 재판이 아닌 것에 인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며, 재판상 화해 자체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⁸⁵⁾

4. 비용비교

AAA는 당사자들에게 조정회의 이전에 예납금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예납금은 조정인과 협의하여 조정과정에서 비용으로 사용가능 하고, 소비되고 남은 잔액은

83) S. R. Alan and E. F. Sherman and S. R. Poppet, *Mediation and Other Non-Binding ADR Process*, 2002, p. 188ff.

84) 정선주, 전제논문, pp. 149~150.

85) 김민중 외 1인, 전제서, p. 66.

당사자에게 반환된다.⁸⁶⁾ 조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균일하게 부담하며, 참관인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⁸⁷⁾

KCAB의 조정에서 당사자들은 조정인 수당 및 관리요금을 사무국에 예납하여야 하되, 예납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사무국에서는 추가예납을 요청할 수 있다.⁸⁸⁾ 조정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문가의 감정비용, 조사 및 검사비용, 통역 및 번역 비용 등은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하나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은 요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⁸⁹⁾ 조정회의가 2회를 초과하여 개최된다면 초과되는 회의당 매 10만원을 조정인 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⁹⁰⁾ 조정신청을 알리는 접수통지가 당사자에게 발송되기 전에 절차가 종료된다면 조정인 수당과 관리요금 전액은 반환된다.⁹¹⁾

조정비용의 책정과 관련하여 AAA는 조정인 프로파일상 시간당 요율을 기초로 조정인마다 다르게 수당을 책정하고 있지만⁹²⁾ KCAB에서는 조정인 수당 및 관리요금을 조정규칙에 부칙으로 정해놓고 있다. 결과적으로 AAA의 조정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은 조정비용에 연연하지 않고 조정의 성공률이나 조정인의 태도 등을 중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두 기관 중 어느 곳의 비용이 적절하다고 평가내리기는 곤란하다. 다만 AAA는 온라인조정을 신청할 때 분쟁금액이 1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50달러의 저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색이 있다.

IV. KCAB 조정의 활용방안

1. 조정위원회의 통합적 운영

국내의 각 법마다 정해놓은 유명무실한 조정위원회를 KCAB로 통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KCAB는 현재 법원연계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그 역할을 다하고 있고, 민간형 ADR 분쟁해결기관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⁹³⁾

86) AAA Commercial Mediation Procedures M-15.

87) AAA Commercial Mediation Procedures M-16.

88) KCAB 조정규칙 제16조 제2항.

89) KCAB 조정규칙 제16조 제5항.

90) KCAB 조정규칙 별표 1, 제2조 제2항.

91) KCAB 조정규칙 별표 1, 제3조 제2항.

92) 김대환, 전게논문, p. 127.

우리나라에서 본래적 의미로서 조정의 효시는 KCAB의 중재규칙상 조정으로서 2000년 12월 29일,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선적 전 검사분쟁조정에 일반 무역거래의 분쟁을 추가하여 KCAB에서 조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뢰성 보장사업자, 피보험자, 신뢰성 인증기관, 지정평가기관 혹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신뢰성 보장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신뢰성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결국 당사자간의 자치적인 해결을 꾀하고 있는 ADR의 기본취지에 부합되도록 KCAB가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재와 조정을 서로 보완 및 발전하도록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Med-Arb의 운영제고

Med-Arb는 처음에는 제3자가 조정인의 역할을 하지만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인의 역할을 하던 제3자가 이번에는 중재인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재판정을 내리는 절충적 분쟁해결방법이다.⁹⁴⁾ 이러한 Med-Arb은 조정과 중재의 해결방법을 모두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조정이 실패로 끝난 후 조정에서의 조정인이 다시 중재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 그 중재인은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태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타협적인 중재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3. 알선제도 보완

KCAB는 기존의 알선제도를 보완하여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로 정착시키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 KCAB는 분쟁당사자가 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제소액분쟁 등의 사건에 대하여 서면알선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분쟁해결에 있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사이버알선도 시행하고 있다.⁹⁵⁾

하지만 국제분쟁의 경우 원격지에 위치한 양당사자가 협상테이블에 모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국제조정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알선 단계(Intermediation)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다.⁹⁶⁾ 알선제도는 조정과는 엄연히 다르

93) 최옥환, 전제논문, p. 67.

94) 김경배, “조정합의 성립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1, p. 24.

95) 이주원, “한국조정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2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10, p. 116.

며, 화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조정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다면 알선제도를 개선하여 조정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이 타당할 것이다.

4. 조정과 중재의 연계

조정은 양당사자의 화해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고, 그리하여 당사자가 도출해낸 최종 합의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율적 이행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성립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AAA에서는 조정결정문에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사자 전원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인이 조정으로 화해가 된 내용을 집행가능한 중재판정문으로 만들고 있다.⁹⁷⁾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결정문에 대하여 통일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양립하고 있다.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공증인으로부터 별도의 집행증서를 받아 강제집행을 행하여야 하거나⁹⁸⁾ 법원에 제소 전 화해를 신청⁹⁹⁾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결국 조정안을 중재판정문으로 전환시키는 입법적 결단은 이미 내려져 있으므로¹⁰⁰⁾ 중재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해내용을 중재판정문으로 바꾸는 방법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¹⁰¹⁾

V. 결론

그동안 국제상사분쟁에 널리 이용되어 온 중재는 그 성격이나 사안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함 때문에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ADR 방

96) 최장호, “우리나라 알선·조정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무역학회지 제27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2, p. 56.

97) AAA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rticle 29(1).

98)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99) 민사소송법 제385조 이하 제220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100)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르면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종료하고,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화해내용을 중재판정문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중재법 제31조).”

101) 오원석·김대환, “AAA와 KCAB 조정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중재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3, p. 160 참조.

안이 모색되었다.

ADR의 한 형태로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조정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조정인이 개입하여 양당사자가 분쟁을 화해적으로 해결하도록 조력한다. 우리나라는 KCAB가 2017년 2월에 조정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그다지 활용도가 높지 않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조정의 효용성을 일찍이 인지하여 그 활용이 활발하다. 조정은 소송 및 중재와 비교할 때 사적인 절차로 진행되므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서로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선택한 합의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AAA의 상사조정규칙과 운영방법을 우리나라의 KCAB 조정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정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KCAB 국제상사조정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현재 각 법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정위원회를 KCAB가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과 조정결정문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조정안을 중재판정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KCAB의 알선제도를 조정제도로 정착·발전시키는 방법 및 Med-Arb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가 KCAB 국제상사조정의 활용을 도모하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기에 AAA와 KCAB의 조정 성공률 및 우리국민의 조정인식률 등을 보여주는 수치상의 연구를 병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고,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김경배, “조정합의 성립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1.
- 김대환,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KCAB와 AAA의 조정제도의 운용 및 활용실태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3.
- 김민중·유병현, 행정형 ADR의 효력에 관한 국내외제도 분석, 법원행정처, 2010.
- 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규칙 시행에 즈음하여”, 계간중재 제337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 도재형, “사적조정 기법”, 노동법연구 제10권 제1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1.
- 박노형, “조정의 선진화 및 활성화 소고”, 계간중재 제329호, KCAB, 2009. 법원행정처, 법원조정센터 자료집 I, 2011.
- 양경승, “우리나라 ADR의 활성화 방안과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2010.
- 이로리, “우리나라의 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계간중재 제337호, KCAB, 2012.
- 이주원, “한국조정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2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10.
- 오원석·김대환, “AAA와 KCAB 조정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중재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3.
- 오원석·김용일,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긴급구제(emergency relief system)’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1.
- 정선주,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정절차의 개선방안 - 전자거래분쟁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서강법연구 제7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정준영, “민사조정제도의 현황과 전망”, 분쟁해결 창간호, 한국조정학회, 2011.
- 최옥환, “민간형 조정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0.
- 최장호, “우리나라 알선·조정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무역학회지 제27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2.
- Alan, S. R., Sherman, E. F. and Poppet, S. R., *Mediation and Other Non-Binding ADR*

Process, 2002.

Jennifer, C.,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s Commitment to Diversity”,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 7 Issue 1, Feb-Apr 2008.

Kent, S. B. and Wilson, C. W., “Questions Clients Have about Whether (and How) to
Mediate and How Counsel Should Answer them”,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 63.2, May-July 2008.

Kovach, K. K., *Mediation: Principles And Practice*, 3rd Edition West, a Thomson
Business, 2004.

_____, *Mediation in a Nutshell*, 2nd Edition, West, a Thomson Business, 2010.

Private Justice, *How civil litigation is becoming a private institution: The rise of private
dispute centers*, *Sou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621, 1994.

Program on Negotiation, “Trying to resolve a dispute? Choose the right process”,
Negotiation, Vol. 12 No. 8, August 2009.

<http://www.aaamediation.com>

<http://www.mediation.org>

ABSTRACT

Utilization of Mediation under KCAB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AAA -

Eun-Hee JANG

Mediation is one of several alternatives to litigation or arbitration. It is the most informal of the alternatives and the only one that gives the parties control over the outcome. The mediator in mediation is there to help the parties persuade each other that it is in their best interests to settle. As several advantages of mediation, it is considered as the fastest way to resolve a dispute because procedures associated with litigation are not imported into the process. In mediation, the client's resources are focused on resolving the dispute as opposed to building armaments of evidence to buttress legal and factual positions.

The AAA commercial mediation rules and operations in the USA are very successful owing to professional training for mediators and simple procedures for mediation to the public. Comparison with USA mediation, KCAB mediation system has several weak points. KCAB mainly deals with administrative matters related to Foreign Trade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KCAB to come up with more improved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For example, mediation should be promoted to the public as who easily rely on litigation or arbitration. Second, Setting a rule for easy access to mediation is needed by bench marking AAA's mediation guidelines and operations. Third, professional mediators should be developed by establishing relevant ADR course in law schools.

This article investigated some differences of mediation system between KCAB in Korea and AAA in USA, and present some suggestions in order to promote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in KCAB.

Keywords : Mediatio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KCAB, AAA, ADR